

朝鮮 後期 蔘貢人의 上納 實態

吳 星

I. 머리말

III. 外方蔘商의 營貢 수행

II. 京貢人의 貢蔘 상납

IV. 맺는말

I. 머리말

朝鮮 後期 人蔘賣買에 종사하던 商人에 대해서는 상업자본의 형성 문제라든가 상인에 대한 파악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표명된 적이 있었다.¹⁾ 人蔘商人에 대하여 다소간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 상인에 대한 고찰이라든가 너무 단편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어 蔘商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한 총체적인 파악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²⁾ 상인간에 내재되어질 수 있는 동질성이라든가

1) 人蔘商人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거나, 독립된 연구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今村軀, 「人蔘史」第2卷 人蔘政治篇·第3卷 人蔘經濟篇(朝鮮總督府 專賣局 1938)

劉元東, 「李朝 貢人資本의 研究」(亞細亞研究 7~4 1964; 李朝後期 商工業研究 1968; 韓國近代經濟史研究 1977)

姜萬吉, 「開城商人과 人蔘栽培」(朝鮮 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1975)

金鍾圓, 「朝鮮後期 對淸貿易에 대한 一考察—潛商의 貿易活動을 中心으로—」(震檀學報 43 1977)

拙稿, 「朝鮮 後期 「蔘商」에 대한 一考察—私商의 據頭와 관련하여—」(韓國學報 17 1979)

또한 재배삼단계 이후의 蔘園農業을 다룬 연구로 洪淳權, 「한말시기 開城 地方 蔘園農業의 전개양상 上·下 —1896년 《蔘園摘奸成冊》의 분석을 中心으로—」(韓國學報 49, 50. 1987 겨울, 1988 봄)도 있다.

2) 今村軀, 劉元東, 金鍾圓氏의 연구에서는 蔘商에 대한 언급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다. 독립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今村軀氏의 연구는 蔘商에 대한 파악에 있어 여러 형태의 상인이 존재하고 있던 것에 대한 인식이 부

상이성, 그러한 점들이 상인의 활동에 미친 영향, 국가 정책과의 함수 관계, 상인으로서의 존재 형태, 상행위의 방법과 성격, 자본의 축적 정도, 관부와의 관계라든가 백성이 입고 있던 폐해와의 관련성 등의 여러 면들이 간과 내지는 그 중 몇가지 면 만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蔘商 가운데에서도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상인간의 특성이라든가, 상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와 역할, 상품 유통과의 관련성과 같은 문제들이 좀 더 해명되어야 하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³⁾

本稿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蔘商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蔘賈人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는 것이다. 인삼 상인 가운데에서도 蔘賈를 청부받아 賈價를 지급받고 인삼을 상납하던 상인들에 대하여 알아 보려는 것이다. 京賈人의 賈蔘 上納 實態라든가 外方蔘商의 營賈 수행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같은 蔘賈人이라 하더라도 이들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 상인으로서의 처지, 당시 문제되고 있던 蔘價와 이들의 활동간의 함수 관계, 蔘賈人에 대한 국가의 태도, 관부와의 관계 등이 어떠하였는가를 다소나마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상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 조금이라도 시사받고자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축하였으며, 劉元東氏의 연구는 賈人資本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蔘商을 다루었던 관계로 私商이라든가 潛商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蔘賈人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점에 대한 검토도 별로 쓰이지 않는다. 金鍾圓氏의 연구 역시 蔘점이 대청무역에 있어서의 잠상활동에 맞추어져 있던 만큼, 잠상을 제외한 인삼상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姜萬吉氏의 연구가 비교적 인삼상인에 대한 언급이 많은 편이나, 개성상인의 활동을 추적하는데 주력하였던 관계로 蔘商 자체에 대한 다양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拙稿 역시 蔘商을 몇가지로 분류하여 이해해 보려 하였지만, 사상·잠상의 활동에 대한 검토에 치우쳐 있다. 또한 각각의 상인에 대한 파악이 다소 혼돈 내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언급코자 한다.

- 3) 蔘商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朝鮮 後期 商人이 지니고 있던 신분의식이라든가 정치와의 관련성, 당시 사회구조와 상인집단간의 관계등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들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II. 京貢人의 貢蔘 상납

蔘商은 우선 貢蔘의 조달을 통하여 인삼매매에 참여할 수 있었다. 채취와 매매에 있어 상당한 규제가 따랐고 사사로운 국외로의 유출이 금지되어 있던 사정 속에서, 貢蔘의 상납은 적법한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윤의 수취도 기대할 수 있던 수단이었다. 나라의 인삼징수⁴⁾와 관련하여 蔘商의 활동 무대가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먼저 중앙으로부터 蔘貢을 청부받아 貢價를 지급받고, 인삼을 납품하던 상인이 있었다. 이들은 곧 大同法 실시 이후 공물제도의 개선에 따라 등장

- 4) 여기에서 조선 후기 인삼의 징수라든가 납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任土之貢의 명분에 따른 實物納, 布·米·錢 등에 의한 代納, 蔘貢인에게 청부하여 납부케 하던 방법들이 있었다. 형태도 다양하였다. 백성들로 하여금 채취, 납부케 하는 것과 大同法에 의한 布·錢·穀의 징수, 實蔘이라는 이름하에 시가의 절반 이하 정도의 錢·布·穀 등을 보조해 주면서 반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 등 여러가지였다. 징수액은 대체로 정해져 있기는 하였지만 추가로 卜定된 경우가 허다하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해준 적도 있었다. 所用處는 國內·外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內局御供蔘을 비롯하여 忠勲府, 議政府, 兵營, 中樞府, 宗親府, 戶曹 등의 各上司에 대한 지급용으로 쓰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朝貢品, 北京에 가는 사절단의 경비, 信蔘·單蔘이라 불리웠던 日本·對馬등지에 대한 贈品用과 公貿易용으로 이용되었다. 人蔘의 品級과 관련되어 어느 지역의 產品인가에 따라 국내외에서의 쓰임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인삼의 징수 체계는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을 비롯한 조선 후기 기록들을 통하여 인삼징수 지역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表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인삼의 징수지역이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상도의 4개 지역, 그 가운데에서도 關東, 關西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지역에서 부담해야 했던 납부량도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였다. 특히 평안도의 경우 대체로 500~600斤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최대의 產蔘地였던 江界地方이 포함되어 있던 때문이었을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米·錢으로 代納한 액수가 많아 정확한 蔘量은 헤아리기 어렵지만, 평안도 지역 못지 않은 부담이 가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여러 명목으로 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도의 羅蔘과 함께 御供用으로 쓰일만큼 關東人蔘의 품질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實物納의 경우 보다 많은 취체의 대상이 되었다. 경상도의 경우에는 전액 실물납이었다. 이는 羅蔘이라

한 貢契人들이다. 선혜청 57 貢에 들어 있던 關東蓼契人을 비롯하여 稅蓼貢人, 人蓼貢物主人, 獵蓼契貢人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활동 근거지와 성립 동기는 이들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尾蓼契人도 있었다. 이 가운데 稅

불리했던 이 지역의 우수한 품질의 인삼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羅蓼는 내의원용(9斤 14兩), 전의감용(25斤), 해민서용(7斤 14兩)으로 쓰여졌다. 함경도 지방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蓼布라는 이름으로 布納토록 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서도 人蓼는 산출되었으나 품질이 열등하였기 때문에 높은 관심은 끌지 못하였던 때문이 아닌가 느껴진다. 그렇지만 관서지방의 예단삼, 신삼이 부족될 경우에는 卜定되는 경우가 잦았다.

한편 실물납이라 하더라도 채취한 蓼量이 부족할 경우에는 他處에서 質納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한 만큼의 布·穀·錢을 납부해야 하였다. 강원도, 평안도 지역에는 현물납 이외에도 蓼錢과 같은 명목으로 代納分이 정해져 있었다. 함경도는 애초부터 布納이었다. 蓼徵이 구설이 된 代納 강요의 면 또한 적지 않았다고 느껴진다. 국가가 폐고 있던 인삼징수 체계의 정신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表) 지역별 인삼징수체계 일람표 (年單位)

도명	구분	형 태	액 수	명 목
함 경 도		布	75同 40匹(蓼 110斤分, 숙종代)	貢 蓼
강 원 도	現物, 錢, 穀		60斤(숙종代)	貢 蓼
			6斤(숙종代)	貢蓼의 補縮으로 加徴
			최소錢 2,852兩 이상(영조 34년)	蓼 火 稅 錢
			최소錢 1,247兩 이상(정조 10년)	
			錢 1,134兩(영조 46년)	補 蓼 番 錢
평 안 도	現物, 錢, 穀		米 15,000石(정조 9년)	補 蓼 穀
			55斤 7兩(영조 10년)	戶 蓼
			30~70斤	稅 蓼
			100~200斤	單 蓼
경 상 도	現 物		200~200斤	信 蓼
			42斤 1兩	貢 蓼

※ 上記表의 내용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액수에 있어 추가 卜定과 減省의 경우로 인한 증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蔘貢人, 人蔘貢物主人, 獵蔘契人 등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關東蔘契는 英祖 35년(1759)에 作貢되었고, 尾蔘契는 正祖 21년(1797)에 이루어졌다.

이들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受價와 進排였다. 貢人으로서의 활동에 甚大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던 것이다. 아래의 기사를 보도록 하자.

① (禮曹判書 金)取魯曰 他貢物則皆給米木或純米 而人蔘貢物之以純木上下 亦出於從優之意(備邊司謄錄 97 英祖 11年 乙卯 3月 8日)

② 右議政 宋(寅明)所啓 兩醫司人蔘貢物 即進排諸上司及政院者 而當初貢價 以人蔘一兩米二石十斗爲定 蔘價稍歇之時 貢人猶有餘剩(備邊司謄錄 102 英祖 13年 丁巳 12月 18日)

①을 보면, 他貢物의 경우에는 모두 米木 혹은 純米를 지급하는데, 人蔘貢物은 ‘從優之意’에 따라 純木으로 上下하였다고 되어 있다. ②에는 당초의 貢價가 人蔘 1兩당 米 2石 10斗로 정하여졌는데, 蔘價가 비교적 헐할 당시에는 오히려 貢人이 잉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나와 있다. 貢契가 성립된 초기에 貢人이 人蔘進排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이윤을 누리고 있던 사정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⁵⁾ 대동법 실시의 정신에 따라 비교적 후한 貢價를 지급받았던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⁶⁾ 貢人이 된 이후 일정한 시기까지는 人蔘에 대한 受價, 進排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은 얻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
- 5) 이때의 貢人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貢契人을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않다. 시기적으로 보아 적어도 關東蔘契人, 尾蔘契人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稅蔘貢人, 人蔘貢物主人, 獵蔘契人 가운데 누구였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元貢貢人으로 본다면, 別貢貢人으로 여겨지는 獵蔘契人은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 6) 대동법 실시 초기에 元貢價가 시가의 10 배까지 마련될만큼 후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10 배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수취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의 기사에

- ① 第今人蔘絕貴 賁人之失業 誠可憊然(備邊司謄錄 97 英祖 11 年 乙卯 3 月 8 日)
 ② 賁價雖從貴磨鍊 而猶不能相當 賁人不勝支勘 鎮日呼訴於備局 賁人之以蔘價蕩敗 衆所共知(備邊司謄錄 102 英祖 13 年 丁巳 12 月 18 日)

라 있듯이, 근자에 人蔘이 絕貴하여 賁인이 失業하게 되었다든가(①), 賁인이 蔘價로 말미암아 蕩敗하게 된 것은 모두가 아는 바라고 있는 것은(②), 이들의 사정과 처지가 결코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蔘의 품귀와 그에 따른 蔘價의 앙등이 원인이었다고 보여진다. 이 당시 삼가의 앙등은 사실 엄청날 정도였다. 나라에서 정한 詳定價를 보더라도 肅宗 19 年(1663) 1 斤에 錢 192 兩이었던 것이 英祖 35 年(1759)에는 480~640 兩, 同王 44 年(1768)에 1,600 兩, 正祖 22 年(1798) 경우에는 2,000 兩을 넘어섰고 同王 22 年(1798) 경우에는 6,400 兩으로 뛰어 오를 정도였다.⁷⁾ 備邊司謄錄 103 英祖 14 年 戊午 3 月 初 1 日 기사에,

近日蔘價踊貴 賁人不能支保 呈訴備局 姑爲權罷矣(中略) 但念賁人輩既失元賁 又責預受 則亦甚可矜 若是永罷 則固欲仰請蕩減

이라 있는 바, 賁인이 蔘價가 踊貴함에 따라 능히 지탱하지 못하게 됨에, 이미 元賁을 잃고 預受價까지도 부채가 되어 있는 형편이라는 말은 바로 위와 같은 사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元賁價로서는 앙등하는 蔘價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賁價를 預受하여 보았지만 역시 해결

7) 肅宗實錄 25 肅宗 19 年 癸酉 3 月 辛酉, 英祖實錄 110 英祖 44 年 戊子 4 月 丁丑, 正祖實錄 16 正祖 7 年 癸卯 11 月 丁酉, 正祖實錄 49 正祖 22 年 戊午 10 月 壬寅. 蔘의 品貴와 그에 따른 蔘價의 폭등 현상은 인삼이 임의적인 생산이라든가 산출의 조절과는 거리가 멀었던 物貨였던 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상·잠상의 활동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책은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⁸⁾ 나라에 대한 부채만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蔘價의 등귀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던 賈契人의 모습은 獐蔘契人의 경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의 기록에 유의해 보았으면 한다.

① 獐蔘契人所爲無狀(中略)(戶曹判書)趙榮國曰 既不革罷 而使之應役 則一斤七十兩價 太半不足 案是行不得之事 而三十兩加下之令 既有勿施之敎 臣不敢仰請加給 而賈人則誠難支矣(備邊司謄錄 124 英祖 28年 壬申 7月 22日)

② 至於被執之蔘 則幾至斷絕矣 以此之故 稅蔘漸竭 凡有禮單 則其勢不得不賣出於獐蔘契 而一斤蔘價 不過爲七十兩之銀(中略) 朝家以七十兩之銀 賣出體蔘於契人處 則目今江蔘固無論 雖北蔘之至劣者 亦無以求質 而爲慮契人之弊 若欲增加 則經費將無以支當 此豈非萬萬可悶者乎(備邊司謄錄 124 英祖 28年 壬申 3月 20日).

①에서는 호조판서 조영국이 돈삼계인의 應役價인 蔘 1斤당 70兩으로서 是는 太半이 부족하니 加給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賈人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말하고 있다. 加給은 이미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賈人의 처지를 생각하여 재고를 요망하고 있다. 應役價가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獐蔘契賈人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다. ②는 被執蔘⁹⁾의 단절에 따른 東萊稅蔘의 감축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禮單蔘¹⁰⁾에 쓰일 인삼을 獐蔘契人으로부터 賣出케 되었

8) 상납 액수를 줄여 그 나머지를 添價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임시적인 방책에 지나지 않았다.

9) 銀을 前渡받고 뒤에 物品을 수령케 하던 방식에 의하여 거래되었던 蔘을 말한다. 稅關의 무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10) 이 당시 禪單蔘의 조달 문제는 通信使行時 필요한 信蔘과 함께 나라에서도 항상 信蔘을 쓰고 있던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註4)의 表)에도 있듯이 그 양도 결코 적은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國用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였다. 「傳曰 今覽關西道臣狀聞 事之憂心莫此爲甚 者此不已 莫重交隣禮單之蔘 其將不充乎」(備邊司謄錄 118 英祖 23年 丁卯 11月 19日)라 있듯이 교린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莫重'한 예단삼의 조달이 항상 문제거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信蔘도 마찬가지였다. 江界에 卜定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여 산지 백성에 대한 일방적 부담만을 지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예단삼의 확보 문제로 말미

는데, 지금 蔘價가 1斤당 70兩銀에 불과하여 이것으로는 江蔘(江界人蔘)은 물론이요 品劣한 北蔘(關北人蔘)도 求質할 수 없으니 貢人의 弊를 염려하여 增加시켜 주려 하여도 經費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나라에서도 貢價가 市價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認知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별다른 方策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貢價今難增加 他無變通之道 今姑權罷蔘貢 自惠廳以其價錢 直爲輸送於進排各處
以爲從市直 質用人蔘之地(備邊司謄錄 102 英祖 13年 丁巳 12月 18日)

라 있듯이, 貢價를 增加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變通策도 없으니 선혜청에서 價錢을 進排 各處에 直送하여 市直에 따라 人蔘을 質用토록 하자 하여 私質의 方向으로 나간 적도 있을 정도였다.

獵蔘契人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써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엄연한 貢弊였지만, 국가의 지원은 없었다. 獵蔘契人이 別質貢價만을 지급받던 貢人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적 뒷받침이 더욱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결국 人蔘을 進排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바친 것은 造蔘¹¹⁾이었다. 인삼이 귀해지면서 생겨난 위조인삼을 상납한

암아 祭物에 人蔘正果를 3년간 사용치 못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備邊司謄錄 90 英祖 7年 辛亥 12月 27日) 예단삼·신삼 조달문제를 놓고 임금과 여러 대신들이 모여 고심하였던 적이 한 두차례가 아니었다. 國政의 담당자들이 예단삼이나 신삼 조달의 애로와 어려움을 물랐던 것이 아니었지만, 금과옥조처럼 사용하였던 卜定의 수단을 통해서든, 간헐적이거나 국고를 내어 환무하는 방법을 통하여서든 인삼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국가 재정이라든가 백성의 사정이나 형편보다도 우선시되었고 중요시되었던 것이 무엇이이었을까. 조선측의 實利와 관계된 까닭은 일찍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당시 사료에 散見되는 바, '莫重'한 예단삼이라든가, 品質이 劣惡한 것으로서 국가의 체모를 손상케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에, 조선 정부가 對倭交隣關係에 있어 나라의 체면이나 체통, 명분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 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日本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문화적 선진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노력이 아니었나도 여겨진다. 여하튼 당시 조선 정부가 지니고 있던 대외의식의 일단이라든가 조선사회가 지니고 있던 성격 문제와 관련하여 한번쯤은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11) 桔梗(도라지)과 같은 식물의 껍질에 인위적 가공을 가하여 인삼과 같이 만드

것이다. 위조인삼의 進上은 아래의 기록에,

徵蔘貢人進排之蔘 箇箇與雜草充塞 而無一箇純然(中略) 以此等無狀之蔘 放恣進排 凡事可欺以方 若此等蔘 焉敢欺乎 此眠無法也(中略) 當該行首所任貢人 令該曹嚴訊一次 勿限年島配(備邊司謄錄 124 英祖 28年 壬申 6月 12日)

라 있듯이 上納후 곧 탄로되었고, 行首는 ‘放恣’한 進排를 했다 하여 勿限年으로 島配되는 결과를 가져 왔을 뿐이었다. 徵蔘契人은 이후 하나의 保全策으로써, 外方貢物의 京貢化 시도 추세에 따라 지방의 營貢을 京作貢化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이루지는 못하였다. 造蔘進排事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放恣無嚴’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는 임금의 뜻에 막혀 돈삼제인의 의도는 꺾이고 말았던 것이다.¹²⁾ 이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고, 이후 貢人으로서의 활동도 점차 위축되어 가지 않았나 해아려진다.

한편 關東蔘契人을 보면, 所屬司는 없었지만 선혜청의 57貢속에 들어있던 품인이었다. 無屬司 元貢貢人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貢價는 錢 14,032兩이었다. 米로 환산하면 2,339石 정도였다. 지급액수로 보면 57貢가운데 28번째 규모였다. 이들은 元貢貢人이었던 만큼 일단 別質貢人과 같은 처우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別質貢人이었다고

는 것을 말한다. 또한 膠付蔘이라 하여 조각난 삼을 아교를 이용하여 완전한 형태의 인삼처럼 만든다든가, 하나의 인삼을 잘라 그 부분에 잔뿌리를 붙여 두개의 삼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蜂蜜에 담구어 斤量을 물리는 방법이 쓰여지기도 하였다. 造蔘을 비롯한 부정인삼은 국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에서도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倭人이 이에 항의, 분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造蔘은 물론 엄금되었다. 위반자는 私鑄者와 마찬가지로一律에 처해졌다.

- 12) (左議政 金)尙魯曰 徵蔘契人之願爲貢人 極張矣(左副承旨 具)允鉉又奏立屬上言 上曰 立屬則猶可爲貢 而徵蔘契人則豈可兼此貢乎 尙魯曰 過甚矣 立屬亦不可使之作貢矣 上命書傳教曰 以關東民人上言方欲講定 而設令作貢 至於徵蔘契人交際蔘契之人 敢欲兼爲進上蔘 已涉張肩 而頃者造蔘之後 茶酌處置 於渠可謂寬典 則其敢若是乎 放恣無嚴 莫此爲甚(承政院日記 1167 英祖 35年 己卯 4月 2日)

생각되는 徵蓼契人과는 어느 정도 다른 입장과 처지에서 實物上納을 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나라에서도, 강원도 지방에서는 關東蓼契 이외의 他道人 實蓼者를 엄금하고 범법자는 該道에서 처벌토록 하여¹³⁾ 이들의 특권을 유지, 보장시켜 주려 하였다. 또한各司에 납부할 경우에는 賑聽으로부터 生蓼添價로 每斤當 錢 450兩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¹⁴⁾ 같은 蓼貢契人이라 하더라도 앞서의 貢契人과 전주어 보면, 보다 나은 형편에서 공물 상납을 수행토록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이 貢蓼 進排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는가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국가 스스로가 元貢보다는 貢價가 싼 別貢의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私貢로까지 전환하려 하던 사정 속에서,¹⁵⁾ 蓼價의 등귀에 따른 添價의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다음의 기록에,

一兩年來 蓼價日益騰貴 京貢漸有難支之憂矣(中略) 今此度支 請得關西小米七千石 依舊詳定折價 以外受例 出付貢人(承政院日記 1276 [英祖 44年 戊子 正月 25日])

라 있듯이, 간헐적으로나마 貢價 지급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였던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蓼價의 계속되는 앙등으로 말미암아 京貢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는 소리가 높은 실정이었다.各司 납부시 生蓼添價로 每斤 錢 450兩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역시 현실이 고려된 액수는 아니었다. 關東蓼契가 창설된 영조 35년 蓼價는 이미 450兩을 넘어섰고, 44년에는 1,600兩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구나 이 가격은 정부의 詳定價였기 때문에 市價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450兩의 添價로는 市價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

13) 關東各邑 則進上蓼商外 他道人實蓼者一切嚴禁 現提者 自本道杖一百定配(續大典 戶典 雜稅)

14) 萬機要覽 財用篇 1 各貢 各宮各司等

15) 吳美一, 「18·9세기 實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韓國史論 14 1986. pp. 121~137 참조.

으로 보인다.

더구나 어떠한 사정에서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關東蔘契貢人은 元貢貢人이면서도,

關東蔘契貢人以爲 凡貢皆先受價後進排 而蔘契則先進排後受價(備邊司臚錄 160 正祖 3年 己亥 3月 9日)

라 있는 바와 같이 ‘先進排 後受價’의 貢價지급제에 놓여 있었다. 공물정책의 변화라든가 蔘價의 문제가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역시 關東蔘契貢人에게는 불리한 여건이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關東蔘契는 「京貢蔘契 當初設立 專爲關東京貢 而名之曰關東蔘契」¹⁶⁾라 있듯이 전적으로 關東人蔘을 京貢하기 위하여 設立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他地域人蔘에 대한 貢納까지 해야 하기도 하였다. 즉 備邊司臚錄 170 正祖 11年 丁未 正月 1日 기사에

關東蔘契貢人 以爲近來蔘產 比前太減 一年經納方在艱辛之中 意外羅蔘賣出戶曹則自戶曹貢納矣徒等 此非矣等當納之物 而笞杖囚禁 一時並起 切於威迫 四求進納之後 中間狼狽 已無餘地 至逃散之境

이라 있듯이 關東人蔘의 產出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關東蔘契人으로서 1年分의 공납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음에도, 호조의 협박에 할 수 없이 羅蔘을 貢納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방으로 구하여 進納하기는 했지만 貢人만이 중간에서 낭패를 보아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할 만큼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關東蔘契人 역시 시간이 갈에 따라 점차 어려운 형편 속에 놓이게 되어 갔으나 헤아려진다. 憲宗 11年 4月의 기록에

關東蔘契即藥縮 進排之貢也 第其積年 貢價之預下 而未及計除者 洽過十五萬兩之多 又有藥房留在萬餘兩 自今受價無可上下 而每年應下 又不得不如例事 當貢之貢人 擔當奉行 而已受價之舊貢人 皆已死亡無處可徵 見在之新貢人 又無以無價辨

16) 度支志 6冊 卷 10 版籍司 貢獻部 2 貢弊 事實

納成群齊訴 惟願納卷退去 前所預下事屬久遠 不可追究 而貢勢既係矜念貢獎 又當釐改姑從其願收卷罷貢 預下條與留在條合十六萬餘兩特爲蕩減(增補文獻備考 151 田賦考 11 憲宗 11 年 4 月)

라 하여 關東蔘契가 오랫동안 貢價를 預下받고도 上納치 못한 액수가 15 萬兩에 이르고, 藥房의 遺在가 萬餘兩이라고 나와 있다. 또한 이미 受價한 舊貢人은 모두 사망한 관계로 徵收할 곳이 없고, 新貢人 또한 無價辨納할 수 없다 하여 納卷退去를 원하며 成群齊訴하니, 預下條와 遺在條 16 만냥을 탕감하고 관동삼계를 혁파한다고 되어 있다. 關東蔘契人의 사정이 어떠하였는가를 짐작케 한다.¹⁷⁾ 탕감은 되었지만, 거액의 부채를 지고 분해되어 버렸던 것이다.

獵蔘契人, 關東蔘契人을 비롯한 蔘貢契人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이들과는 달리 특별한 계기에 의하여 성립된 契人들이 있다. 바로 尾蔘契人이다. 이들은 正祖 年間에 논의되었던 ‘華城新治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契人들으로써, 시기적 특성의 산물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華城을 地方都市로 발전시키려는 계획하에 상업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尾蔘貿易을 할 수 있는 物主 20 명을 선발, 尾蔘契員으로 삼고, 이들에게 家蔘¹⁸⁾매매의 독점권과 官錢許貸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正祖 21 年 2 月 22 日에 반포된 「華城府內新撥富家戶蔘帽區劃節目」¹⁹⁾에 있는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① 而今此移居之人 多是自前爲物主者 且以尾蔘契屬之渠輩 則仍以輩作爲物主 使之主管貿易 可謂兩便 而無論官帽與家蔘 非華城物主與差人 則毋得直買於本地爲白遣 各處商賈 必皆交易於華城物主 俾亂雜之弊 以爲聊賴之地爲白齊

② 赴燕人八包 本以人蔘充給者(中略) 則入送之蔘 乃是家植者 質聚充入之節 家

17) 일반적으로 無屬司元貢貢契人의 경우 有屬司貢人에 비하여 영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점도 참고될 것이다. (德成 外志子, 「朝鮮後期の 貢物貢納制—貢人研究의 前提作業으로—」(歷史學報 113 1987) pp.46~57. 참조)

18) 正祖年間에 들어와 성행하게 된 재매인삼. 인삼의 인공재배는 적어도 18 세기 초엽에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널리 보급되어 대량 생산단계에 들어간 것은 正祖代에 들어와서였다고 보여진다.

19) 備邊司謄錄 185 正祖 21 年 丁巳 2 月 22 日

蔘物主自當勾管是白如乎 亦令華城尾蔘契人 次知舉行爲白齊

③ 契人雖多富案者 而新移錢接之際 廣貿物貨之時以其私力 似有不逮之患 以畧干官錢 從便假貸 然後庶爲接濟之道 以慶尙監營所管南倉錢五萬兩 平安兵營留庫錢五萬兩 合十萬兩 移屬華城府 使之限年許貸於契人處 以爲資賴之地 收其利殖 俾作修城之需爲白齊

尾蔘契人は 이전에 物主로 활동하던 상인들으로써(①), 부유한 사람들이었다(③). 이들은 京城에 근거를 두고 상업 활동을 벌이고 있던 사람들로 보이며,²⁰⁾ 정부와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던 상인들로 생각된다. 혹 正祖의 幸行時 재정적인 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되기도 한다. 이들은 각처의 상인들에게 家蔘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①), 赴燕人 八包人蔘의 충당도 반드시 이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②). 뿐만 아니라 慶尙監營所管南倉錢 5 만냥과 平安兵營留庫錢 5 만냥 合計 10 萬兩을 許貸받아 재정적 뒷받침도 받고 있었다. 상당한 특권과 특혜가 尾蔘契人에게 주어진 것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잘 알 수가 없다.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의 소산이었던 만큼, 3年 뒤 正祖 死後에도 위와 같은 특권과 혜택이 계속해서 주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의 蔘貢契人은 대체로 창설 초기에는 국가의 배려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기가 갈수록 계속되는 蔘價의 騰貴를 元貢價가 따르지 못하였고, 添價라든가 그 밖의 국가적인 지원 역시 여의치 못하여 점차 쇠퇴의 길을 걸어 갔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元貢貢人이었는데 別貢貢人이었는데에 따라 입장과 성격이 다소 다를 수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蔘價의 앙등 앞에서는 결국 손을 들고마는 형편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이들을 위하여 卹恤한 變通策은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20) 先以京城富案戶二十戶 從願作契 利其裕財之方 許以通貨之道(華城府內新授富案戶蔘帽區劃節目)

貢人의 처지와 사정을 살필 만큼의 여유를 국가 스스로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蔘價를 당해 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京貢을 담당하던 蔘價契人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자본의 축적이라든가 이를 통한 상인으로서의 성장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던 것으로 해아릴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들이 지녔던 貢人權이라는 권리 역시 끊임없는 매력의 대상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Ⅲ. 外方蔘商의 營貢 수행

蔘價契人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로써, 外方貢物의 서울로의 上納을 담당하던 상인들이 있었다. 18세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營作貢 즉 지방의 監營이 전문상납인으로 하여금 貢物을 구입하여 京各司에 바치도록 하는 공물상납형태²¹⁾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존재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에 주의하여 보자.

蓋進上人蔘 當初以大同米折價 令各邑採納 而中間以採納之難 設置營下蔘商 各邑給價於蔘商 使蔘商防納 而以蔘價踊貴 大同折價之米數少 各邑加賦米布 或錢文於民 結 添給蔘商矣(備邊司謄錄 64 肅宗 38年 壬辰 正月 11日)

進上人蔘은 당초에 大同米折價로 各邑에 속하여 採納토록 하였는데 中間에 採納이 어려워져 營下에 蔘商을 設置하고, 各邑에서 蔘商에게 給價하고 防納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蔘價가 踊貴하여짐에 따라 大同折價米가 부족하여 각읍에서 米, 布, 錢文등을 加賦하여 蔘商에게 添給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蔘商은 바로 감영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營貢을 맡고 있던 사람들로 보인다. 元價 이외에 蔘價의 騰貴에 따라 添價를 지급 받던 모습도 드러난다. 이들이 元價와 添價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營貢의 실시 배경이라든가 방법이 京貢과 별다른 차이가

21) 外方貢物의 營貢에 대해서는 吳美一, 「18·9세기 새로운 貢人權·鷹契창설운동과 亂廳活動」(奎章閣 10 1987)이 참고된다.

없던만큼 그리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앞서의 蔘貢契人의 대부분이 添給 문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던 것에 비하면, 營貢人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아래 기사에,

而添給蔘商者 多寡各異 雖以今番所報者見之 江陵則一兩蔘價米則四石十三斗零市則十五疋 旌善則錢文三十兩矣 近來蔘價雖高不至此多 而其所聚歛於窮民 爲蔘商圖利之資者乃如此(備邊司謄錄 64 肅宗 38年 壬辰 正月 11日)

라 하여 蔘商에 대한 添給의 多寡는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그 액수는 蔘價를 웃돌고 있어 窮民에게서 歛聚한 바가 蔘商의 '圖利之資'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충분한 만큼의 貢價를 받고 있었던 것 같다.

正祖 6年(1782) 5月 11日 여러 대신들이 江原道暗行御史 李夔의 別單에 있는 蔘弊 문제를 놓고 논의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判府事 鄭弘淳의 말을 들어 보면,

蔘商元定本價之外 更加高騰 橫侵各邑 已是莫大之弊(中略) 蓋蔘商本是一道難支之弊 自各邑隨其土產 各自備納 豈有不可爲之理 而蔘商皆是營下人之故 惟恐其失利必欲沮戡 此習不革 則蔘弊無可正之日矣(備邊司謄錄 164 正祖 6年 壬寅 5月 11日)

라 하여 蔘商이 元定本價 외에 添價를 높이 하여 각읍을 橫侵하고 있어 莫大한 弊가 되고 있는데, 이들 蔘商은 모두 營下人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이 失利를 보지 않기 위하여 각읍에서 土產에 따라 備納하는 것을 막으니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蔘弊가 바로 잠힐 날이 없다는 것이다. 守禦使 鄭民始도 같은 자리에서,

蔘商輩 每以關封之說 恐嚇列邑 故不得不有此添給之舉 今雖欲勿實本邑 專責蔘商 其勢末由 蓋內局蔘品之漸劣 各邑添價之益增 其弊專在於蔘商

이라 지적하고 있다. 즉 蔘商輩가 關封을 구실로 列邑에 압력을 가하니

부득불 添給하지 않을 수 없어 添價가 날로 증가하여 가는데 이와 같은 폐단은 전적으로 蔘商에게 있다는 것이다. 備邊司謄錄 167 正祖 8年 甲辰 12月 29日 기사에,

蓋於自營門捧上封進之時 一或點退 使之改備 則蔘商輒走該邑 而告之曰今番見退者幾許 若不添價幾許 無以準納是如 多般恐動 則該邑守令 不得不巧作名色 橫歛 補給 一年二年有加無減 轉成難支之弊

라 하여 營門에서 捧上封進時, 點退 改備토록 되면 蔘商이 該邑 수령에게 添價하지 않으면 準納되지 못한다고 告함으로써 守令들이 부득불 명목을 만들어 橫歛, 補給하니 이것이 갈수록 늘어나 백성들의 ‘難支之弊’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앞의 이야기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헤아려 질 수 있을 것이다.

정조 7년 11月 강원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趙弘鎮도

蔘貢痼弊 未有甚於本道(中略) 而蔘商之弊 予嘗聞之矣 供納之權 徒歸狙僮 極意占託 動必增價 守宰莫敢誰何 今年添幾文銅 明年又添幾文銅 視詳定元價 不啻倍蓰 畢竟爲弊 小民受困 每見蔘貢之來納 吾民倒懸之狀 宛在予目中(正祖實錄 16 正祖 7年 癸卯 11月 丁酉)

라는 내용의 蔘商의 폐단을 보고하고 있다. 즉 蔘商이 수령과 결탁하여 供納權을 장악하고 添價를 증가시켜, 드디어는 詳定元價의 5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蔘貢 때만 되면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備邊司에서도 御史別單에 대한 覆啓에서,

營下之爲蔘商者 低仰操縱 添價之弊 月增歲加(同上)

라 하여 營下의 蔘商이 가격을 멋대로 조종하여 添價의 폐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올때 營貢을 수행하던 蔘商은 지방 관부와 깊이 밀착되어 있으면서 元定本價뿐만 아니라 정확한 액수는 헤아리기 어렵지만 충분한 添

價를 받고 있었다 할 것이다. 인삼 영공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충실하게 누리고 있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貢蔘을 조달, 상납한다는 면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의 삼공제인과 동질적이었는지 모르나, 貢納의 수행 과정을 통하여 결과된 이들의 처지는 엇갈리는 면모를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관부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양자가 유사하다 할 수 있겠으나, 보다 밀도있는 것은 후자의 경우였다고 보아진다. 상인으로 서의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蔘商의 營貢 수행은 결국 백성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蔘弊의 궁극적 원인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蔘商에게 돌려졌다. 關東民人이 蔘으로 인하여 弊를 입게 되는 源頭는 蔘商의 居間操縱에 있다는 지적이라든가,²²⁾ 關東의 蔘商은 一道의 莫大之弊²³⁾ 라는 말들은 蔘弊를 보는 시각이 어떠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증앙에서도

而各邑之所添價 則將依前無藝 苟不略加釐整 民將不得支保矣 蔘商雖難猝罷 各邑之以添價 加賦於民者 則不可不酌定其數 使之毋大濫賦(備邊司謄錄 64 肅宗 38年 壬辰 正月 11日)

라 하여 蔘商을 비록 혁파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添價 지급에 따르는 부담이 과중하여 백성이 지탱할 수 없게 되니 加賦를 酌定하여 濫賦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濫賦를 금한 것이지 加賦 자체를 막지는 않았던 것이다. 폐단이 여러 차례 지적되기는 하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증앙의 예산에 지장을 받지 않고 人蔘을

22) 關東民人之以蔘受弊 非但土採稀貴 價本騰踊而已 究其源頭 則專由於蔘商之居間操縱(備邊司謄錄 167 正祖 8年 甲辰 12月 29日)

23) 備邊司謄錄 164 正祖 6年 壬寅 5月 11日. 다음의 기록도 참고될 것이다.

聞羅蔘絕賣之弊 亦由嶺營官屬都賈驛權利操縱之故 以五六倍之厚價 而進上所封 皆是家蔘 以致連次退却 事極寒心(正祖實錄 30 正祖 14年 庚戌 4月 庚辰)

상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營貢에 의해 빚어진 蓼弊 개혁에 국가가 얼마만큼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듯 싶다. 蓼弊의 마지막 受害者는 다름아닌 백성이었던 것이다.²⁴⁾

- 24) 蓼商에 의한 蓼弊가 거론되었지만, 인삼남부와 관련하여 백성들이 겪고 있던 고통과 어려움도 그에 못지 않은 것이었다. 지역에 따라 蓼弊의 원인별 輕重이 있었지만, 蓼徵에 말미암은 면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잠시 알아보았으면 한다. 비변사등록 104 영조 14년 8월 2일 기사를 보면 강원도 지역에 실시된 대동법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春川 지역의 御用藥材로서의 人蓼남부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즉 춘천에서 남부해야 할 蓼이 1년에 80兩인데 蓼 1兩價錢이 점차 添加되어 30兩에 이르러 도합 2,400兩이 되니 民間의 痛弊라는 것이다. 御用藥材라 하더라도 變通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조 21년 3월 30일 기록을 보아도, 關東지역은 土瘠民稀한 곳인데 賦役이 煩重한 실정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蓼貢이 가장 不均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貢蓼의 分定은 한번 정하면 다시 고치지 않으니, 蓼路가 絶貴하여진 근래에 와서는 峽邑의 民人들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수십일동안 虎豹의 위험을 무릅쓰고 채취하려 해도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10중 7.8이 되어 他處에서 質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1兩蓼價가 40여貫에 이르러 처음보다 2~3배나 올랐으니 民生이 어찌 날로 困瘵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備邊司謄錄 113 英祖 21年 乙丑 3月 30日) 이와 같은 현상은 純祖 7年 4月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강릉지방의 경우 春·秋·賜 貢蓼 116兩 가운데 春等貢蓼을 京貢으로 移作한 뒤 남은 바가 55兩 1錢과 軍加蓼 3兩 零인데, 詳定元價外에 蓼火田稅錢, 補蓼軍官番錢, 殖利錢등으로 添價에 충당하게 되어 1년에 民戶에게서 徵出하는 것이 만여냥이 되니 民勢가 이미 渙散之境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備邊司謄錄 198 純祖 7年 丁卯 4月 25日)

蓼弊현상은 평안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而但念人蓼 本來我國土產 專以江界所出 酬應倭館 國中藥用矣'라 있듯이 당시 최대의 인삼산지였던 江界地方은 그 폐해가 더욱 심하였다. 江界는 人蓼이외에는 他財가 없는 곳인데 民人이 官稅를 능히 措備하지 못하면 私債를 乞貸하여 상환하고 貸與를 받은 집에 賣身하여 그 값을 치루니 私債가 많은 자는 종신토록 役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나(備邊司謄錄 40 肅宗 12年 丙寅 3月 15日), 尾蓼價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虛戶가 甚多하다는 이야기는(備邊司謄錄 146 英祖 40年 甲申 9月 1日) 江界民의 사정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正祖 14년의 경우에는 江界蓼政이 苦瘼으로 되어 있어 民이 모두 流亡하여 四千戶만이 남았는때, 이들이 이전의 二萬餘戶가 所納한 蓼을 남부해이 하는 실정이 되었던 것이다(備邊司謄錄 177 正祖 14年 庚戌 8月 21日). 이 밖에도 質蓼의 경우 蓼價를 加給해 줄 것을 요망한다든가 人蓼價敝弊를 除滅해 달라는 事例 역시 빈번하였다. 인삼정수에 관련되어 폐해를 입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IV. 맺는말

이상에서 人蔘 貢納을 담당하고 있던 蔘貢人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京貢人의 上納實態라든가 營貢을 수행하고 있던 蔘商에 대하여 알아본 것이다. 얻어진 결과를 정리해 봄으로써 맺는말에 대신코자 한다.

京貢人으로서의 關東蔘契人을 비롯하여 稅蔘貢人, 人蔘貢物主人, 獵蔘契人등이 있었다. 활동 근거지와 성립 동기는 다소 달랐으나 尾蔘契人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대체로 공제 창설 초기에는 비교적 후한 貢價를 지급하던 나라의 공물 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잉여도 남길 수 있는 바탕은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인삼이 부족해지고 蔘價 역시 지속적으로 등귀함에 따라 당초에 정해진 元貢價로서는 市價를 따르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났다. 元貢貢人이든 別貢貢人이든 이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았나 보여진다. 添價라든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요망되었지만, 국가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란 여의치 못한 사정이었다. 이렇다 할 變通策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獵蔘契人이 위조인삼을 進排하였다가 島配된 일까지 생겨났던 것은 蔘貢人 스스로라도 손익을 맞추어 보려던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도 보여진다. 關東蔘契人 역시 거액의 부채를 지고 끝내는 헐파되고 말았다.

한편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상인으로서, 外方貢蔘의 상납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營貢을 수행하고 있던 이들은 京貢人과 마찬가지로 蔘價의 앙등에 따른 添價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방감영과 결탁하여 添價를 높이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關封을 구실로 한 橫侵과 거간조종등의 농간을 통하여 人蔘營貢에서 얻는 이익을 충실하게 누리고 있었다. 蔘弊의 원인으로 여러 사정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營貢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이들의 作弊 또한 그 이익을 훌륭하게 담당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그들 대부분이 모두 營下人이었다는 점에서 납득

이 가는 바다. 貢蔘上納이라는 면에서는 京貢人과 동질성을 띄었는지 모르나, 貢納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의 수취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정도로 생각되지 않는다. 관부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양자가 유사하다 할 수 있겠지만, 營貢人의 경우가 훨씬 밀도있는 것이었다고 보아진다. 蔘貢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입었던 피해와의 관련성 면에서는 후자가 우선될 수 있을 것이다.